방송통신위원회 (디지털이용자기반과 - 스팸) 02-2110-1522, 15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



[시행 2024. 8. 14.] [법률 제20260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통신자원정책과 - 통신과금관련) 044-202-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사이버침해대응과 -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) 044-202-6461, 6462 방송통신위원회 (이용자정책총괄과) 02-2110-1514 방송통신위원회 (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-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) 02-2110-1564, 1549 방송통신위원회 (디지털이용자기반과 - 본인확인제 관련) 02-2110-1521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디지털기반안전과-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) 044-202-6777, 677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4. 1. 29., 2007. 1. 26., 2007. 12. 21., 2008. 6. 13., 2010. 3. 22., 2014. 5. 28., 2020. 6. 9.>

- 1. "정보통신망"이란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・가공・저장・검색・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- 2. "정보통신서비스"란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란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이용자"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전자문서"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 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.
- 6. 삭제 < 2020. 2. 4.>
- 7. "침해사고"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
 - 가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
 - 나.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
- 8. 삭제 < 2015. 6. 22.>
- 9. "게시판"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 화상·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.
- 10. "통신과금서비스"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.
 - 가. 타인이 판매・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"재화등"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・징수하는 업무
 - 나. 타인이 판매·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·징 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
- 11. "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"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- 12. "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"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·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3. "전자적 전송매체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・문자・음성・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.
-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 6. 13., 2013. 3. 23., 2020. 6. 9.>
- 제3조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 -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0. 2. 4.>

- 제4조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·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(이하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,, 2013. 3. 23,, 2017. 7. 26,, 2020. 2. 4.>
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8. 12. 24., 2020. 6. 9.>
 - 1.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
 - 2. 정보통신망의 표준화
 - 3.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
 - 4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 - 5.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
 - 6. 삭제 < 2020. 2. 4.>
 - 6의2. 삭제 < 2020. 2. 4.>
 - 7.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
 - 7의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·보급
 - 8.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
 - 9.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 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4조의2(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합성영상등"이라 한다)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,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
 - 2.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
 - 3.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
 - 4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
 - 5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6.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4. 12. 3.]

[시행일: 2025. 6. 4.] 제4조의2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5조의2(국외행위에 대한 적용)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

- 제6조(기술개발의 추진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・기술협력・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7조(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기술관련 정보"라 한다)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 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8조(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 거·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2017. 7. 26.>
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・방법・절차 및 인증표시, 제5항에 따른 수거・반품・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[전문개정 2008. 6. 13.]
- 제9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, 지정취소·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10조(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)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11조(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) ① 정부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·자동화·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(이하 "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"라 한다)를 개발·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 - 1.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
 - 2.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
 - 3.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
 - 4.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·지원
 - 5.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 - 6.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
 - 7.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12조(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)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13조(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, 지역, 산업,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·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
 -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14조(인터넷 이용의 확산)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,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15조(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·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16조 삭제 <2004. 1. 29.>

제17조 삭제 <2004. 1. 29.>

제3장 삭제 <2015. 6. 22.>

제18조 삭제 <2015. 6. 22.>

제19조 삭제 <2015. 6. 22.>

제20조 삭제 <2015. 6. 22.>

제21조 삭제 <2015. 6. 22.>

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<개정 2020. 2. 4.>

제1절 삭제 <2020. 2. 4.>

제22조 삭제 <2020. 2. 4.>

- 제22조의2(접근권한에 대한 동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 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(이하 "접근권한 "이라 한다)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

가.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
-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- 2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

가.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
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

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18. 6. 12.>
-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,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6. 12.>

[본조신설 2016. 3. 22.]

제23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2. 4.>

-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- 2. 삭제 < 2020. 2. 4.>
- 3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
-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2, 2, 17.]

제23조의3(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·제공·관리 업무(이하 "본인확인업무"라 한다)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
- 2.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・재정적 능력
- 3.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
-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・지정절차 및 휴지・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5.]

제23조의4(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
- 4.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5.]

- 제23조의5(연계정보의 생성・처리 등)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(이하 "연계정보 "라 한다)를 생성 또는 제공・이용・대조・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(이하 "처리"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
 - 1.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 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 - 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(이하 "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「전자정부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·처리를 요청한 경우
 - 나.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· 처리를 요청한 경우
 - 3.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·처리를 요청한 경우
 - 4.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・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 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·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 - 1.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
 - 2.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
 - 3. 연계정보 생성·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 계획
 - 4.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
 - 5.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
 - 2.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
 - 3.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・기술적・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4.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
 -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(이하 "연계정보 이용기관"이라 한다)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절차,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,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23.]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[시행일 미지정] 제23조의5제1항제3호

제23조의6(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)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・처리하는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・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・기술적・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(이하 "안전조치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·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·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23.]

제24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4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25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6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6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2절 삭제 <2020. 2. 4.>

제27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7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27조의3 삭제 <2020. 2. 4.>

제28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8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29조 삭제 <2020. 2. 4.>

제29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3절 삭제 <2020. 2. 4.>

제30조 삭제 <2020. 2. 4.>

제30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31조 삭제 <2020. 2. 4.>

제32조 삭제 <2020. 2. 4.>

제32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32조의3 삭제 <2020. 2. 4.>

제32조의4 삭제 <2020. 2. 4.>

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삭제 < 2020. 2. 4.>
- 2. 삭제 < 2020. 2. 4.>
- 3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・서류 등의 제출
-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2. 4.>
- 1. 국내대리인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- 2. 국내대리인의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)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-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8. 9. 18.]

제4절 삭제 <2011. 3. 29.>

제33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3조의2 삭제 <2011. 3. 29.>

제34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5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6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7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8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39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40조 삭제 <2011. 3. 29.>

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<개정 2007. 1. 26.>

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정보"라 한다)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
- 2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
- 3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- 4.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·이용자단체, 그 밖의 관련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2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)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정보제공자"라 한다) 중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42조의2(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) 누구든지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9. 15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**제42조의3(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)**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.
 -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·관리하고,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43조(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) ①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**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)**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·교육·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게재자"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22., 2023. 1. 3.>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・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.
 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 -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 -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

-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・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4.>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24.>
 - 1. 청소년유해정보
 - 2.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
 -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24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4.>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24.>
 - 1. 청소년유해정보
 - 2.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
 -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·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.<신설 2024. 12. 3.>
 -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2. 24,, 2024. 12. 3.>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[시행일: 2025. 6. 4.] 제44조의4

- 제44조의5(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·운영하려면 그 게 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(이하 "본인확인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・준정부기관 및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・지방공단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
 - 2. 삭제 < 2014. 5. 28.>
 - ② 삭제<2014. 5. 28.>
 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 -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<개정 2014. 5. 28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

[2014. 5. 28.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. 8. 23.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.]

- 제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)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・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(민・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・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)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**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9. 15., 2016. 3. 22., 2018. 6. 12.>
 - 1. 음란한 부호・문언・음향・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・판매・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 - 2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
 - 3.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
 - 5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
 - 6.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2.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3. 총포·화약류(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)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
 - 7.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
 - 8.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9.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(敎唆)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<개정 2016. 3. 22., 2018. 6. 12.>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3. 22., 2018. 12. 24.>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)이 있었을 것
- 2.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
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3.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
-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·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3.>
- 1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 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
- 2.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
- 3.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
- 4.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[전문개정 2008. 6. 13.]
- **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9. 15., 2016. 3. 22., 2018. 6. 12.>
 - 1. 음란한 부호・문언・음향・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・판매・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 - 2.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
 - 3.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
 - 5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
 - 6.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2.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
 - 6의3. 총포·화약류(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)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7.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
- 8.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
- 9.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(敎唆)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<개정 2016. 3. 22., 2018. 6. 12.>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3. 22., 2018. 12. 24., 2024. 12. 3.>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 및 제14조 의2에 따른 촬영물·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과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]이 있었을 것
- 2.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
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3.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
-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1. 23.>
- 1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 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
- 2.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
- 3.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
- 4.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[시행일: 2025. 6. 4.] 제44조의7

제44조의8(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 · 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4.]

제44조의9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불법촬영물등"이라 한다)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(이하 "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
-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
- 3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성착취물
-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,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- 제44조의10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,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 -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 -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,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분쟁조정위원회"는 "심의위원회"로, "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"은 "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"으로 본다.
 -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
-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 - 1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 - 2.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・수신할 수 있는 기기・설비・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・설비・장비 비(이하 "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"이라 한다)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이하 "정보보호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6. 9.>
 -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6. 3. 22., 2020. 6. 9.>
 - 1.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・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・운영 등 기술적・물리적 보호조치
 - 2. 정보의 불법 유출・위조・변조・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 - 3.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
 - 4.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·조직·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
 - 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·검사·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**제45조의2(정보보호 사전점검)**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개정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2013. 3. 23., 2017. 7. 26.>

- 1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·허가를 받거나 등록·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
-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또는 전기통신사업
-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·방법·절차·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2. 2. 17.]
- 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총액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7. 7. 26., 2018. 6. 12., 2021. 6. 8.>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4. 5. 28.>
 -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자산총액,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)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.<신설 2018. 6. 12.>
 -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1. 6. 8.>
 - 1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가.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개선
 - 나.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
 - 다.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
 - 라.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 - 가.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
 - 나.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
 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
 - 라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
 - 마.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
 -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, 필요한 정보의 교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4. 5. 28., 2018. 6. 12.>
 -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5. 6. 22., 2018. 6. 12.>
 -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8. 6. 12.> [본조신설 2012. 2. 17.]
- 제46조(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"이라 한다)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, 2023. 1. 3.>
 - 1.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(이하 "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"라 한다)
 - 2.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, 훼손,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사항에서 제외한다.<신설 2023. 1. 3.>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,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.<신설 2023, 1, 3.>
-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.<신설 2023. 1. 3.>
-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 ·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, 발생원인,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신설 2023. 1. 3.>
-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·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,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1. 3.>
-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23. 1. 3.>
-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,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3. 1. 3.>

- 제46조의2(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)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22, 2013. 3. 23, 2017. 7. 26.>
 - 1.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(이하 "시설이용자"라 한다)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
 - 2.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
 -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, 발생일시,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
 -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46조의3 삭제 <2012. 2. 17.>

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・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·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(이하 "정보보호 관리체계"라 한다)를 수립·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2. 2. 17., 2015. 12. 1., 2018. 12. 24., 2020. 6. 9., 2024. 1. 23.>
- 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
- 2.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- 3.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,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신설 2015. 12. 1, 2017. 7, 26.>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-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<신설 2012. 2. 17., 2015. 12. 1.>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(이하 "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.<신설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- 1.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(이하 "인증심사"라 한다)
- 2.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
- 3. 인증서 발급 관리
- 4. 인증의 사후관리
- 5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
- 6.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"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2. 1., 2017. 7. 26.>
- ⑧ 한국인터넷진흥원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-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17., 2015. 12. 1.>
-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 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
-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·절차·범위·수수료,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·절차,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5. 12. 1.>
-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·절차·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5. 12. 1.>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47조의2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
- 5.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[제목개정 2015. 12. 1.]

제47조의3 삭제 <2020. 2. 4.>

- 제47조의4(이용자의 정보보호)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,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,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20. 6. 9.>
 -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20. 6. 9.>
 - ④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,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20. 6. 9.>
 - ⑤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[제47조의3에서 이동 <2012. 2. 17.>]

- 제47조의5(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)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1., 2017. 7. 26.>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
- 2.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·절차·수수료, 등급의 유효기간,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2. 17.]

- **제47조의6(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)**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,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(이하 "정보보호 취약점"이라 한다)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·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0.]

- 제47조의7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.
 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 - 2.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·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4. 1. 23.]
- **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**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"악성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·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24. 1. 23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48조의2(침해사고의 대응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22.,

2013. 3. 23., 2017. 7. 26.>

- 1.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
- 2. 침해사고의 예보 경보
- 3.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, 해당 정보통 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, 2013. 3. 23, 2017. 7. 26.>

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2.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- 3.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9. 4. 22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
- 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 4. 22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6. 10.>
 - 1. 삭제 < 2022. 6. 10.>
 - 2. 삭제 < 2022. 6. 10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 6. 10.>
 -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4. 2. 13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
- 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10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)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<신설 2022. 6. 10., 2024. 2. 13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신설 2024. 2. 13.>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·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6. 10., 2024. 2. 13.>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6. 10., 2024. 2. 13.>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 4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「통 신비밀보호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6. 10., 2024. 2. 13.>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,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6. 10., 2024. 2. 13.>
-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의 구성·운영,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2. 6. 10., 2024. 2. 13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
- 제48조의5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, 기술 지원 등의 조치
 - 2.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 - 3.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
 - 2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·검사·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- **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(이하 "정보보호인증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(이하 "인증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있다.
 - ⑦ 정보보호인증·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49조(비밀 등의 보호)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**제49조의2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20. 2. 4., 2022. 6. 10.>
 - 1.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
 - 2.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・경보
 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
 - 가. 접속경로의 차단
 - 나.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
 - 다.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.<신설 2016. 3. 22, 2017. 7. 26, 2020. 2. 4.>
 -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<신설 2022, 6, 10.>
 -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2. 6. 10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[제목개정 2020. 2. 4.]

- 제49조의3(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) ① 경찰청장·검찰총장·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0.]

-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3. 22., 2020. 6. 9.>
 - 1.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
 - 2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
 -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2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4. 1. 23.>
- 1.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・방해하는 행위
- 2. 숫자・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・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3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
- 4.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
- 5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
-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 동의,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.<개정 2024. 1. 23.>
-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5. 28.]

제50조의2 삭제 <2014. 5. 28.>

- 제50조의3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)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 -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삭제 < 2014. 5. 28.>
 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>
 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>
 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28.>

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0조의5(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50조의6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,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・법인・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개발·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50조의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 -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5. 28.]

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)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, 판매, 제공, 유통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4. 1. 23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- 제51조(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)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
 - 2.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
 -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16. 3. 22.>
 - 1.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설정
 - 2.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ㆍ기술적 조치
 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(정보통신망의 구축·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인터넷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09. 4. 22., 2020. 6. 9.>
 -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<개정 2009. 4. 22.>
 -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6. 22., 2017. 7. 26., 2020. 2. 4., 2020. 6. 9., 2021. 6. 8., 2022. 6. 10., 2024. 1. 23.>
 - 1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,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・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・정책 및 제도의 조사・연구
 - 2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・분석
 - 3.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
 - 4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・훈련
 - 5.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
 - 6.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
 - 7.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,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・인증,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,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・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
 - 8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・보급 지원
 - 9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
 - 10.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
 - 11.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・원인분석・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・대응・협력 활 동
 - 12. 「전자서명법」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
 - 13.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
 - 14.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
 - 15.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
 - 16.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
 - 17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
 - 18.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
 - 19.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
 - 20.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
 - 21.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 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
 - 22.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
 - 23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·행정안전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-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6. 3. 22.>
 - 1. 정부의 출연금
 - 2.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
 - 3.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
 -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 4. 22.>
 -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개정 2009. 4. 22.>
 -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9. 4. 22.>

[제목개정 2009. 4. 22.]

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<신설 2007. 12. 21.>

제53조(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

26.>

- 1. 재무건전성
- 2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
- 3.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
- 4. 사업계획서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「상법」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·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0. 3. 22.>
- ④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, 사업의 양도・양수 또는 합병·상속, 사업의 승계, 사업의 휴업·폐업·해산 등에 준용한다. 이 경우 "별정통신사업자"는 "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"로 보고, "별정통신사업"은 "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"으로 본다.<개정 2010. 3. 22., 2020. 6. 9.>
-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제54조(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2. 29, 2013. 3. 23, 2017. 7. 26, 2020. 6. 9.>

- 1.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업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 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었던 자로서 그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
- 4.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는 자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제55조(등록의 취소명령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2,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6. 22.>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15. 6. 22.]

[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- 제56조(약관의 신고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 [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- 제57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 -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제58조(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5., 2014. 5. 28.>

- 1.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
- 2.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·이용의 거래 상대방(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·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"거래 상대방"이라 한다)의 상호와 연락처
- 3.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
- 4.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
-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,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 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(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, 통 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>
-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(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)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 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14. 5. 28.>
-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(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)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 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신설 2014. 5. 28.>
-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·이용내역의 대상기간, 종류 및 범위,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,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·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4. 5. 28.>
-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신설 2014. 5. 28., 2017. 7. 26.>
-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신설 2014. 5. 28.,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제58조의2(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・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

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

보(이하 "구매자정보"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·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6. 12.]

- 제59조(분쟁 조정 및 해결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6. 9.>
 -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.<신설 2018. 6. 12.>
 -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 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,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, 2018. 6. 12.>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18. 6. 12.]

[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- 제60조(손해배상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6. 9.>
 -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6. 9.>
 -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>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- **제61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15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1.「청소년 보호법」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・대여・제공하는 자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
 - 가.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
 - 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
 - 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

[본조신설 2007. 12. 21.]

[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<2007. 12. 21.>]

제8장 국제협력 <신설 2007. 12. 21.>

제62조(국제협력)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삭제 < 2020. 2. 4.>
- 2.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
- 3.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
- 4.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3조 삭제 <2020. 2. 4.>

제63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9장 보칙 <신설 2007. 12. 21.>

- **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8. 9. 18., 2020. 2. 4.>
 - 1.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
 - 2.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
 - 2의2.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·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 - 3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·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20. 2. 4.>
 - 1.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
 - 2.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
 - 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,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표의 방법・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 3. 29, 2013. 3. 23, 2017. 7. 26, 2020. 2. 4.>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개의 방법・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 3. 29, 2013. 3. 23, 2017. 7. 26.>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, 법적 근거,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, 제출・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,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.<개정 2020. 2. 4.>
 -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출입할때 성명・출입시간・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(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)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-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9. 4. 22.,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,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64조의2(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·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3. 29, 2013. 3. 23, 2017. 7. 26, 2020. 2. 4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・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・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·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1. 3. 29, 2013. 3. 23, 2017. 7. 26.>
 - 1.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, 출입검사,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
 - 2.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 송절차가 끝난 경우
 - 3.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 간이 끝난 경우
 - 4.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4조의3 삭제 <2020. 2. 4.>

제64조의4(청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0. 2. 4., 2020. 6. 9.>

- 1.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- 2.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- 3.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
- 4.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- 5.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
- 5의2.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
- 5의3.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- 6.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

[본조신설 2015. 12. 1.]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(이하 "투명성 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
 - 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, 삭제요청 등의 횟수, 내용, 처리기준,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 - 3.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・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
 - 5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- **제65조(권한의 위임・위탁)**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・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6. 9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09. 4. 22., 2011. 3. 29., 2013.
 - 3. 23., 2017. 7. 26.>
 -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09. 4. 22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5조의2 삭제 <2005. 12. 30.>

- 제66조(비밀유지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 2. 17., 2020. 6. 9.>
 - 1. 삭제 < 2011. 3. 29.>
 - 2.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

2의2. 삭제 < 2020. 2. 4.>

- 3.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
- 4. 삭제 < 2012. 2. 17.>
- 5.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7조 삭제 <2020. 2. 4.>

제68조 삭제 <2010. 3. 22.>

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68조의2 삭제 <2015. 6. 22.>

제6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09. 4. 22.,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69조의2 삭제 <2020. 2. 4.>

제10장 벌칙 <신설 2007. 12. 21.>

- 제70조(벌칙)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 -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70조의2(벌칙)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본조신설 2016. 3. 22.]

제71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3. 22., 2018. 12. 24., 2024. 1. 23.>

- 1. 삭제 < 2020. 2. 4.>
- 2. 삭제 < 2020. 2. 4.>
- 3. 삭제 < 2020. 2. 4.>
- 4. 삭제 < 2020. 2. 4.>
- 5. 삭제<2020. 2. 4.>
- 6. 삭제 < 2020. 2. 4.>
- 7. 삭제 < 2020. 2. 4.>
- 8. 삭제<2020. 2. 4.>
- 9.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
- 10.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
- 11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- 12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
- 13.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·유포한 자
- 14.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
-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신설 2016. 3. 22., 2024. 1. 23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7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15. 3. 27., 2020. 2. 4., 2024. 1. 23.>

1. 삭제 < 2016. 3. 22.>

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의2.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
- 2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
- 2의2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3.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・중개・권유・광고한 자
 - 가.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 - 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- 5.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- ② 삭제<2016. 3. 22.>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5. 28, 2016. 3. 22, 2018. 6. 12, 2020. 2. 4, 2022. 6. 10, 2024. 2. 13.>

- 1. 삭제 < 2020. 2. 4.>
- 1의2. 삭제<2020. 2. 4.>
- 2.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
- 3. 삭제 < 2024. 1. 23.>
- 4.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・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- 5.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6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
- 7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
- 7의2. 제58조의2(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 거나 고소·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- 8.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제7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4. 5. 28.>

- 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・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2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・문언・음향・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・판매・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- 3.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4.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- 5. 삭제<2014. 5. 28.>
- 6. 삭제<2024. 1. 23.>
- 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・양수 또는 합병・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75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

- 제75조의2(몰수 추징)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 [본조신설 2016. 3. 22.]
- 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5. 6. 22., 2015. 12. 1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18. 9. 18., 2020. 2. 4., 2021. 6. 8., 2023. 1. 3., 2024. 1. 23., 2024. 2. 13.>
 - 1.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
 - 1의2.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2의2. 삭제 < 2020. 2. 4.>
 - 2의3. 삭제 < 2020. 2. 4.>
 - 2의4. 삭제 < 2020. 2. 4.>
 - 2의5.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・기술적・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2의6.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3. 삭제 < 2020. 2. 4.>
 - 4. 삭제 < 2020. 2. 4.>
 - 5. 삭제 < 2020. 2. 4.>
 - 5의2. 삭제 < 2020. 2. 4.>
 - 6. 삭제 < 2014. 5. 28.>
 - 6의2.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 - 6의3.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
 - 6의4.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6의5.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
 - 6의6.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6의7.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7.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- 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
 - 9.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
 - 9의2.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 - 9의3.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10.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

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1.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. 삭제<2020. 2. 4.>
- 12.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6. 3. 22., 2018. 6. 12., 2018. 9. 18., 2020. 2. 4., 2020. 6. 9.>
- 1. 삭제 < 2020. 2. 4.>
- 1의2. 삭제 < 2020. 2. 4.>
- 2. 삭제 < 2020. 2. 4.>
- 3. 삭제 < 2020. 2. 4.>
- 4. 삭제 < 2020. 2. 4.>
- 4의2.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- 4의3.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
- 4의4.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
- 5. 삭제 < 2020. 2. 4.>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09. 4. 22., 2011. 4. 5., 2012. 2. 17., 2014. 5. 28., 2015. 6. 22., 2015. 12. 1., 2016. 3. 22., 2017. 7. 26., 2018. 6. 12., 2020. 2. 4., 2020. 6. 9., 2022. 6. 10., 2023. 1. 3., 2024. 1. 23., 2024. 2. 13.>
- 1. 삭제 < 2015. 6. 22.>
- 2. 삭제 < 2015. 6. 22.>
- 2의2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
- 2의3.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2의4.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2의5. 삭제<2020. 2. 4.>
- 3.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
- 4.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- 4의2.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- 4의3.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은 제외한다.
- 4의4.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5. 삭제 < 2018. 6. 12.>
- 6. 삭제 < 2015. 12. 1.>
- 7.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
- 8. 삭제 < 2012. 2. 17.>
- 9. 삭제 < 2012. 2. 17.>
- 10.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
- 11.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11의2. 삭제 < 2024. 2. 13.>
- 11의3.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2.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
- 12의2.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12의3.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

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

12의4. 삭제 < 2024. 1. 23.>

- 13.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
- 14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・폐업・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
- 15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16.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- 17.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
- 18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19.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
- 20.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20의2.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도액을 증액한 자
- 20의3.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
- 20의4. 제58조의2(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21.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
- 22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23.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24.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・검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25.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⑤ 삭제 < 2017. 3. 14.>
- ⑥ 삭제 < 2017. 3. 14.>
- ⑦ 삭제 < 2017. 3. 14.>

[전문개정 2008. 6. 13.]

부칙 <제20260호,2024. 2. 13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